朝鮮後期 濟州島 田畓文記의 硏究

— 高在一氏 所藏文記를 中心으로 —

高 昌 錫*

目 次

머리말
Ⅰ. 田畓賣買文記의 樣式
Ⅱ. 田畓取得의 經緯
Ⅲ. 田畓賣買의 原因
Ⅳ. 相換文記와 分財記類
맺는 말

머 리 말

本稿는 현재 西歸浦市 中文洞에 거주하고 있는 高在一氏 집안에 所藏되어 있는 일련의 田畓文記를 分析 檢討한 것이다. 筆者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同氏는 약 90張의 田畓文記를 다른 古文書類와 함께 소장하고 있었다.[1]

田畓文記는 時期上으로 朝鮮朝 肅宗(24張)初로부터 景宗(3張)·英祖(39張)·正祖(11張)·純祖(4張)·憲宗(5張) 및 高宗(4張) 때에 걸쳐 작성된 것이다. 약간의 19세기의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17세기 후반으로부터 18세기에 걸쳐

* 제주대학교 사학과 교수

1) 田畓文記를 제외한 古文書로는 戶口單子, 所志(2), 招辭(2), 等狀(2), 標文(表文 포함 3), 不忘記(4), 書目(1), 情由(1), 立案(1), 許養文(1) 등이 있었는데, 내용상으로는 養子·奴婢·墓所·雇工·山訟·土地訴訟 관계의 것들이었다.

이루어진 것이었다.

또 名目上으로는 明文(71張)·相換文 (또는 相換明文, 8張)·表文(2張)·衿記(2張)·葉作記(1張)·別給(3張)·掃墳條(1張)·都許明文(1張) 및 都會明文(1張) 등으로 表記되어 있어, 그 종류가 다양한 편이다.

周知하는 바와 같이 오늘날 전해오는 古文書 가운데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田畓文記이다. 넓은 의미로 田畓文記라 하면 이른바 明文(土地文書)으로 표기된 田畓의 賣買나 相換·還退 등에 관한 것이 있고, 또 分財記로서 和會·分給(衿給)·別給·許與(許給)·衿付 등의 文記가 있다.

本稿에서 다루고자 하는 田畓文記의 名目 중 明文·相換文·表文 등은 전자에 속하는 것이며, 別給·衿記·葉作記·都許·都會·掃墳條 등은 후자(分財記)에 속한다고 하겠다. 그러나 本稿에서 主眼點을 두고 다루고자 하는 것은 田畓賣買文記로서의 明文(71張)에 관한 것이다. 즉 賣渡者는 어떠한 經緯로 田畓을 取得했으며, 또 取得한 田畓을 放賣하게 된 원인은 무엇 때문일까 하는 것이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먼저 田畓賣買文記의 樣式을 알아보고, 그 다음으로 田畓取得의 經緯, 田畓放賣의 原因, 分財記의 순서로 論理를 진행해 보고자 한다. 단 表文은 明文에 포함시켰으며, 탈락이 심하여 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文記는 제외하였다.

다음의 표는 田畓文記를 年代順으로 一括 정리해 본 것이다. 그리고 干支上에(*)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해당 연도와 干支가 잘못 표기된 경우이다.

田畓文記의 一括目錄

〈표(1)〉

代順	年　　代	干　支	月　日	姓　　名
1	肅宗　7(康熙 20, 1681)	辛　酉	1. 25	校生李燦前明文
2	肅宗 16(康熙 29, 1690)	庚　午	7. 7	正兵高莫男處明文
3	肅宗 21(康熙 34, 1695)	乙　亥	2. 6	姪子益山處明文
4	肅宗 21(康熙 34, 1695)	乙　亥	2. 6	長妻男柳益山處相換記
5	肅宗 22(康熙 35, 1696)	丙　子	4. 27	李燦前明文
6	肅宗 23(康熙 36, 1697)	丁　丑	4. 13	高允重處別給
7	肅宗 23(康熙 36, 1697)	丁　丑	12. 15	校生高允重前明文
8	肅宗 24(康熙 37, 1698)	戊　寅	3. 11	李孝積處明文
9	肅宗 25(康熙 38, 1699)	己　卯	12. 16	高允重處明文
10	肅宗 26(康熙 39, 1700)	庚　辰	1. 7	高允重處明文
11	肅宗 28(康熙 41, 1702)	壬　午	8. 6	李燦前明文
12	肅宗 30(康熙 43, 1704)	甲　申	2. 11	高允重處明文
13	肅宗 32(康熙 45, 1706)	丙　戌	1. 23	朴承元處明文
14	肅宗 32(康熙 45, 1706)	丙　戌	2. 17	安訓處明文
15	肅宗 32(康熙 45, 1706)	丙　戌	3. 9	高允重前明文
16	肅宗 33(康熙 46, 1707)	丁　亥	8. 24	高允重前明文
17	肅宗 36(康熙 49, 1710)	庚　寅	2. 23	異姓四寸妹婢生今處明文
18	肅宗 38(康熙 51, 1712)	壬　辰	4. 13	高允重前明文
19	肅宗 40(康熙 53, 1714)	甲　午	1. 8	高允重前明文
20	肅宗 40(康熙 53, 1714)	甲　午	2. 10	高允重前明文
21	肅宗 40(康熙 53, 1714)	甲　午	2. 13	高允重前明文
22	肅宗 40(康熙 53, 1714)	甲　午	3. 29	高允重前明文
23	肅宗 40(康熙 53, 1714)	甲　午	4. 5	幼學姜世翼前明文
24	(탈　　락)	탈　락	1. 22	仲子允重處別給
25	景宗 25(康熙 61, 1722)	壬　寅	6. 10	高允重明文 (相換)
26	景宗　4(雍正　2, 1724)	甲　辰	6. 10	高允重明文
27	景宗　4(雍正　2, 1724)	甲　辰	6. 13	高允重明文
28	英祖　6(雍正　8, 1730)	庚　戌	12. 8	高允重明文
29	英祖　7(雍正　9, 1731)	辛　亥	3. 10	長婦姜氏處別給
30	英祖　8(雍正 10, 1732)	壬　子	7. 19	高瑞鑑處明文

代順	年　　代	干　支	月　日	姓　　名
31	英祖 10(雍正 12, 1734)	甲　寅	4. 7	長婦姜氏處別給
32	英祖 11(雍正 13, 1735)	乙　卯	9. 22	末女處衿記
33	英祖 12(乾隆 1, 1736)	丙　辰	5. 1	寡婦金氏處明文
34	英祖 13(乾隆 2, 1737)	丁　巳	1. 3	高允重處明文
35	英祖 13(乾隆 2, 1737)	丁　巳	1. 3	高允重處明文
36	英祖 13(乾隆 2, 1737)	丁　巳	3. 3	高允重處明文
37	英祖 13(乾隆 2, 1737)	丁　巳	12. 14	高瑞鑑處相換明文
38	英祖 17(乾隆 6, 1741)	辛　酉	8. 18	任致遠處明文
39	英祖 17(乾隆 6, 1741)	辛　酉	8. 19	三寸前明文
40	英祖 17(乾隆 6, 1741)	辛　酉	8. 25	高 (탈　락)
41	英祖 19(乾隆 8, 1743)	(누락)	12. 15	良女月良處明文
42	英祖 20(乾隆 9, 1744)	甲　子	3. 8	高瑞鑑前明文
43	英祖 22(乾隆 11, 1746)	乙　丑*	3. 2	安詣哲處明文
44	英祖 23(乾隆 12, 1747)	丁　卯	1. 2	(탈　락)
45	英祖 26(乾隆 15, 1750)	庚　午	2. 9	李重澤前明文
46	英祖 27(乾隆 16, 1751)	辛　未	2. 18	高瑞鑑前明文
47	英祖 31(乾隆 20, 1755)	丙　子*	9. 15	高召史處明文
48	英祖 32(乾隆 21, 1756)	丙　子	1. 9	父母主遺言據掃墳條
49	英祖 32(乾隆 21, 1756)	丙　子	12. 21	高瑞鑑處明文
50	英祖 33(乾隆 22, 1757)	丙　子*	탈락 7	高益寬處明文
51	英祖 35(乾隆 24, 1759)	己　卯	12. 17	前別監姜世翼前明文
52	英祖 36(乾隆 25, 1760)	庚　辰	2. 13	高處章前相換明文
53	英祖 40(乾隆 29, 1764)	甲　申	누락 2	(탈락)相換明文
54	英祖 40(乾隆 29, 1764)	甲　申	2. 20	高瑞鑑前相換文
55	英祖 41(乾隆 30, 1765)	乙　酉	1. 22	(탈　　락)
56	英祖 41(乾隆 30, 1765)	乙　酉	윤2. 25	妻남高瑞鑑處明文
57	英祖 43(乾隆 32, 1767)	丁　亥	10. 22	高處堅處明文
58	英祖 43(乾隆 32, 1767)	丁　亥	2. 5	高萬富處明文
59	英祖 45(乾隆 34, 1769)	己　丑	3. 9	第陸女婿高昶敬處衿記
60	英祖 45(乾隆 34, 1769)	누　락 (己　丑)	4. 17	高瑞鑑前明文
61	英祖 46(乾隆 35, 1770)	庚　寅	3. 15	子女等處都許明文
62	英祖 46(乾隆 35, 1770)	庚　寅	7. 12	高瑞鑑前明文

代順	年　　代	干　支	月　日	姓　　名
63	英祖 46(乾隆 35, 1770)	누　락	7. 14	高昶敬處明文
64	英祖 46(乾隆 35, 1770)	庚　寅	7. 14	高瑞鑑處明文
65	英祖 50(乾隆 39, 1774)	乙　未*	8. 10	李植根處明文
66	英祖 52(乾隆 41, 1776)	丙　申	10. 26	高昶敬前明文
67	正祖　2(乾隆 43, 1778)	戊　戌	12. 20	(탈　　락)
68	正祖　5(乾隆 46, 1781)	辛　丑	5. 27	高 (탈락) 〈相換文〉
69	正祖　9(乾隆 50, 1785)	乙　巳	8. 10	高元謙前 (明文)
70	正祖 10(乾隆 51, 1786)	丙　午	1. 9	高昶敬處相換明文
71	正祖 10(乾隆 51, 1786)	丙　午	4. 18	康宗湖處明文
72	正祖 10(乾隆 51, 1786)	丙　午	누락 18	高昶敬處明文
73	正祖 11(乾隆 52, 1787)	丁　未	1. 8	高昶敬處明文
74	正祖 18(乾隆 59, 1794)	甲　寅	1. 28	(탈　　락)
75	正祖 18(乾隆 59, 1794)	甲　寅	2. 25	高宗濟處明文
76	正祖 19(乾隆 60, 1795)	乙　卯	1. 22	高元謙處明文
77	正祖 19(乾隆 60, 1795)	乙　卯	2. 17	高元謙處明文
78	純祖 11(嘉慶 16, 1811)	辛　未	4. 17	都會明文
79	英祖 22(嘉慶 22, 1822)	누　락 (丙　寅)	5. 1	吳氏處明文
80	純祖 18(嘉慶 23, 1818)	戊　寅	3. 23	都會明文
81	純祖 33(道光 13, 1833)	癸　巳	4. 日	高台伯處明文
82	憲宗　3(道光 17, 1837)	丁　酉	7. 24	李仁孫處明文
83	憲宗　3(道光 17, 1837)	丁　酉	8. 17	高台伯前明文
84	憲宗　3(道光 17, 1837)	누　락	8. 17	高台伯前明文
85	憲宗 10(道光 24, 1844)	甲　辰	3. 8	次妹處葉作記
86	憲宗 10(道光 24, 1844)	癸　卯*	8. 18	高(탈락)處明文
87	高宗　2(同治　4, 1865)	乙　丑	1. 18	李邦榮處相換文
88	高宗　5(同治　7, 1868)	己　巳*	2. 21	高應萬處明文
89	高宗　7(同治　9, 1870)	庚　午	1. 23	高應萬處明文
90	高宗 29(光緒 18, 1892)	壬　辰	5. 5	高瓚弘處明文

Ⅰ. 田畓賣買文記의 樣式

田畓의 賣買는 賣渡人과 買受人 쌍방간의 합의에 의해 目的物의 引渡를 明文化한 契約書의 작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계약서는 明文이란 이름으로 불리워지는데, 이는 곧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文書란 뜻이다. 그리고 明文은 계약이 체결될 때 작성되어 쌍방간에 인도되는 문서이므로, 賣渡人이 당초 권리를 취득할 때에 引受했던 本文記(舊文記), 즉 그전 매매 때에 작성된 文記에 비해 이를 新文記라고도 한다.[2]

그러면 田畓의 賣渡文記는 어떻게 작성되는 것일까? 우선 《儒胥必知》에 기재된 畓券〈土地文記式〉을 참고해 보면 다음과 같다.

大國年號幾年甲子某月某日某前(處)明文
右明文事段, 切有緊用處, 某邑某面某里伏在, 某字第幾畓幾員幾束幾斗落幾夜味庫叱果, 某字第幾田幾負幾束幾日耕, 願買人處, 永永放賣爲去乎, 日後子孫族屬中, 如有雜談是去等 持此文記, 告官卞正事.

財主姓名着名
證人姓名着名
筆執姓名着名

本稿에서 다루고 있는 田畓文記들도 위의 《儒胥必知》에 나타나 있는 양식과 대체로 동일하게 작성되어 있다. 그러나 제주도 내에 전해 오는 田畓文記들에서는 위의 양식에 나타나 있는 내용 중 地番, 즉 千字文順으로 되어 있는 某字田畓이라는 것과 幾日耕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예를 거의 발견할 수 없고, 다만 면적의 단위로 田인 경우 落只(지기) 보다 付只(부치기), 畓인 경우 夜味(배미) 대신에 片(판이)이라는 용어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이해의 편의를 위해 실제의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밑줄 吏讀)

(A) 康熙參拾玖年庚辰正月初柒日高允重處明文.
(B) 右明文事段, 矣身値此凶荒, 資生爲難乙仍于,

2) 朴秉濠 : 《韓國法制史攷》— 近世의 法과 社會 —, 法文社, 1987, pp. 14~15.

(C) 妻叔祖母成婚別給爲在,

(D) 中文里北邊上基員, 皮牟貳斗付只, 四標東·南·北吳興文田·西林召史田, 四標爲等如分明爲遣,

(E) 價本正木壹疋, 准計捧上後, .

(F) 同允重處, 永永放賣爲去乎,

(G) 日後良中, 幸有同生子孫中更生隅有去等, 持此文記以, 告官卞正事.

(H) 田主 私奴 海敏 (左手寸)

證人 奴 卜良 (左手寸)

筆執 鎭撫 高門繼 (手決)

이를 다시 알파벳 순으로 정리해 보면,

(A) 田畓放賣年月日과 買得者의 姓名

(B) 田畓放賣의 事由 (値此凶荒)

(C) 田畓取得의 經緯 (妻叔祖母成婚別給)

(D) 田畓所在地(中文里北邊上基員)·作物(皮牟)·面積(貳斗付只)·位置(四標 : 東南北 吳興文田 西 林召史田)

(E) 田畓의 價格 (正木壹疋)

(F) 永久的 賣買의 文言 (永永放賣)

(G) 後日 雜談의 對策 (持此文記 告官卞正)

(H) 賣主·證人·筆執의 姓名(花押) 순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위 明文의 내용은 '康熙 39년, 즉 朝鮮朝 肅宗 26년(1700) 정월 7일에 田主 私奴 海敏이 高允重에게, 이 몸이 흉년을 당하여 資生이 어려운 탓으로, 妻叔祖母가 成婚時에 別給한 中文里 北邊 上基員 皮牟(겉보리) 두 말부치기, 四標(당해 전답이 접한 4방의 경계)는 東·南·北이 吳興文의 밭, 西가 林조이(召史)의 밭으로 四標가 모두 분명하고, 값은 正木 한 필로 일정 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받은 후, 同 允重에게 영원히 放賣(賣渡)하므로, 日後에 행여 同生子孫 중 다시 사단을 일으키는 일이 있거든 이 文記를 가지고 官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 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田畓文記의 내용은 작성자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財主·證人·筆執은 姓名과 花押(手決)을 하게 되는데, 身分이 賤民일

경우에는 手寸(奴 → 左手寸)·手掌(婢 → 掌押, 掌形 또는 右手寸)을 하게 되며, 財主가 士大夫家의 夫人일 경우에는 押印을[3], 또 財主가 喪主일 경우에는 喪不着이라 하여 署名하지 않는다.

그런데 本文記(舊文記)중에는 다른 田畓이 併錄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며, 또 그 중 일부를 割賣하는 경우에는 新文記(明文)중에 본문기를 인도할 수 없다는 취지를 明記하는 경우도 있다[4]. 이제 그 例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前後部分 省略)

① …本文記段, 他田并付乙仍于, 不得許與爲稱, 庚申分賣買文記段, 兩邊都會發問爲去乎 …

② …文記段他田地并付, 故不得許給, 而論理成文以給爲置 …

③ …本文記段, 他田畓并付乙仍于, 不得許給爲去乎 …

④ …本文記段, 同田一邊并付, 故不得許給爲去乎 …

⑤ …本文記段, 他畓并付, 故不得許與爲置 …

이상은 本文記(舊文記)에 他田·他田地·他田畓·田一邊·他畓 등이 함께 기재되어 있으므로 許與(許給)하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또

⑥ …本文記段, 他畓并付衿記, 故不得許給爲去乎, …

⑦ …本文記段 衿記中并付 故不得許給爲去乎, …

라 하여, 衿記 즉, 衿付文記에 함께 기록된 경우가 있고, 또

⑧ …本文記段, 年久腐破未能詳考乙仍于, 不得許與爲置, …

라 하여, 本文記가 오래되고 파손되어 詳考할 수 없으므로 許與하지 못한다는 것이 있으며, 또

⑨ …本文段, 和會中在錄, 故不得許給爲去乎, …

라 하여, 本文記가 和會文記에 함께 기록되어 있어 許給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또

3) 崔承熙 :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p. 388.
4) 朴秉濠 前揭書.

⑩ …本文記段, 都會在錄, 故不得許給, …

이라 하여, 都會文記에 함께 기록되어 있어 허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또

⑪ …本文記段, 并付流來田, 故不得許與, …

라 하여, 流來田에 併錄되어 있어 許與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⑫ …本文記段, 去年分失火, 故不得許與是在果, …

라 하여, 지난 해의 失火로 燒失되어 許與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또

⑬ …本文記段, 葉作中并付, …

라 하여, 葉作記 중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또

⑭ …本文記段, 都許幷付, 故不得許給爲去乎 …
⑮ …本文記段, 都許入錄, 故不得許給爲乎矣 …

라 하여, 都許文記에 併錄되어 있어 許給하지 못하고 있는가 하면, 또 相換文記에서도

⑯ …兩片本文記段, 他田并付, 故不得相換爲去乎 …

라 하여, 양쪽의 本文記는 다른 밭(他田)이 함께 기재되어 있어 相換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상은 몇몇 특징적인 實例를 열거한데 불과하며 이외에도 허급하지 못하는 내용의 賣買文記는 많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本文記와 아울러 영원히 許給·放賣·報給·報納하는 경우가 있으며, 相換文記에서도 本文記와 함께 相換되는 경우가 있다. 그 실례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前後部分省略).

① …買得本文記并以, 許給爲置, …
② …買得文記并以, 同前永永放賣報給爲置, …
③ …本文記并以, 永永報給爲去乎, …
④ …本文記并以, 永永放賣爲去乎, …

⑤ …本文記并以, 同人處 永永放賣爲去乎, …

⑥ …本文記并以, 永永報納爲去乎, …

⑦ …本文記并以, 許給爲去乎, …

⑧ …本文記并以, 放賣爲去乎, …

⑨ …永永報給而文并以, 許給爲去乎, …

⑩ …本文記并以, 永永相換爲去乎, …

그러나 대부분의 文記에는 本文記에 대한 언급이 없다.

Ⅱ. 田畓取得의 經緯

田畓文記에 기재된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전답을 취득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祖上 대대로 내려오는 田畓인 경우다. 이 경우 祖上傳來, 祖上流來, 流來, 祖上田, 矣祖上流來, 矣外祖上流來, 妻邊祖上流來, 外家流來 등으로 표기되고 있다.

① 祖上傳來, 多年耕食爲在, 廣寺田員, 粟種參斗付只(조상으로부터 전래하여 여러 해 갈아 먹던 廣寺員田 粟種 세 말부치기)

② 祖上傳來耕食畓, 陸片合租種柒斗升付只 (조상으로부터 전래하여 갈아 먹던 논 여섯 筆地〈片〉 합계 벱씨 일곱 되부치기)

③ 祖上流來爲有在, 里內員, 麻種貳斗落只(조상으로부터 유래한 里內員〈거리 왓〉 삼씨 두 말지기)

④ 祖上流來田, 廣王乭員, 粟種參升付(조상으로부터 유래한 밭 廣王乭員 조씨 세 되부치기)

⑤ 祖上流來是在, 柰木里員, 粟種壹斗伍升付(조상으로부터 유래한 柰木里員 조씨 한 말 다섯 되부치기)

⑥ 祖上流來爲有在, 無巨於未員, 皮牟貳拾斗付(조상으로부터 유래한 無巨於未員 겉보리 스무 말부치기)

⑦ 祖上流來大浦里西廣所員, 牟種壹石付(조상으로부터 유래한 大浦里 西廣所員 보리씨 한 섬부치기)

⑧ 祖上流來田, 大靜塞達里東南五老洞員, 皮牟陸斗付只(조상으로부터 유래한 밭 大靜縣 塞達里 東南 五老洞員 겉보리 여섯 말부치기)

⑨ 流來是遣, 中文里東邊員, 皮牟陸斗付(…유래한 中文里 東邊員 겉보리 여섯 말부치기)

⑩ 祖上田, 里內員, 皮牟參斗付只(조상전 里內員 겉보리 세 말부치기)

⑪ 祖上田, 於頭溫旨員, 粟種陸升落只(조상전 於頭溫旨員 조씨 여섯 되지기)

⑫ 矣祖上流來田, 小斤童山員, 皮牟陸斗付(나의 조상으로부터 유래한 밭 小斤童山員 겉보리 여섯 말부치기)

⑬ 矣外祖上流來, 非乙於池西邊員, 粟種伍升付只(나의 외가 조상으로부터 유래한 非乙於池 西邊員 조씨 다섯 되부치기)

⑭ 妻邊祖上流來田, 別老川岳北邊員, 皮壹石付只(妻家 조상으로부터 유래한 밭 別老川岳 北邊員 겉보리 한 섬부치기)

⑮ 外家流來田, 上代員, 皮牟陸斗付只(외가에서 流來한 밭 上代員 겉보리 여섯 말부치기)

※ 妻邊祖上流來田과 外家流來田은 衿得(깃득)田의 성격이 짙다. 즉 賣渡者의 妻나 母가 妻家나 外家로부터 그 몫으로 받은 조상유래전인 것이다.

둘째는 衿得(깃득)田이다. 즉 田畓을 나눌 때 자기 몫으로 받은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막연히 衿得田이라 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養祖母衿得, 矣母衿得, 舅父前衿得, 妻邊衿得, 父主衿得, 矣妻衿得, 外家衿得, 吾矣衿下 등으로 표기되고 있다.

① 七日泉員, 衿得田, 租種壹斗付只 (七日泉員에 있는 깃득전 벱씨 한 말부치기)

② 養祖母衿得, 旌義下牛屯里乙內員, 皮牟 陸斗付只 (養祖母가 몫으로 받은 旌義縣 下牛屯里 乙內員 겉보리 여섯 말부치기)

③ 矣母衿得是遣, □牛洞員, 粟種捌升付 (나의 어머니가 몫으로 받은 □牛洞員 조씨 여덟 되부치기)

④ 吾矣母主衿得田, 中文里南邊別老岳員, 皮牟□斗付只 (나의 어머니께서 몫으로 받은 중문리 남변 별노악원 겉보리 □말부치기)

⑤ 舅父前衿得爲有在, 無仇於尾員, 皮牟拾貳斗付只 (시아버지로부터 몫으로 받은 無仇於尾員 겉보리 12 말부치기)

⑥ 妻邊衿得爲在, 舟貴員, 皮牟柒斗付 (妻家에서 처 몫으로 받은 舟貴員 겉보리 일곱 말부치기)

⑦ 妻邊衿得是在, 塞達所掌詢巨員, 皮牟伍斗付只 (처가에서 처 몫으로 받은 塞達里 所掌詢巨員 겉보리 다섯 말부치기)

⑧ 妻邊衿得爲去乎, 開要水員, 畓伍片合租種壹斗伍升付只 (처가에서 처 몫으로 받은 開要水員 논 다섯 필지〈片〉 합계 볍씨 한 말 다섯 되부치기)

⑨ 父主衿得爲在, 茂九尾員, 皮牟拾斗付只 (아버지께서 몫으로 받았던 茂九尾員 겉보리 열 말부치기)

⑩ 外家衿得是在, 中文里下野改葬基員, 牟種拾參斗付只 (外家에서 어머니 몫으로 받았던 중문리 下野改葬基員 보리씨 13 말 부치기)

⑪ 吾矣衿下祖上田, □當員伏在, 壹斗伍升落只 (나의 몫으로 받은 祖上田 □當員에 있는 한 말 다섯 되지기)

셋째는 買得田이다. 이 경우는 買得, 買得田, 矣買得, 矣妻□買得, 父主買得田, 家夫買得田 등으로 표기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누구가 누구로부터 매득했는지 분간하기 어려운 文記도 있다.

① 奴汝立處買得是在, 巨子屹員, 粟種壹斗付只 (奴 汝立으로부터 買得한 巨子屹員 조씨 한 말부치기)

② 李世仁處買得田, 舟貴員, 皮牟柒斗付 (李世仁으로부터 매득한 밭 舟貴員 겉보리 일곱 말부치기)

③ 買得邊老川岳員, 皮牟伍斗付只 (매득한 邊老川岳員 겉보리 다섯 말부치기)

④ 里內員, 金德夏李重暉兩人處買得田, 皮牟參斗付只 (金德夏·李重暉 양인으로부터 매득한 里內員 겉보리 세 말부치기)

⑤ 矣妻□買得畓庫, 在於下塞達馬興洞員, 畓捌片租種玖升付只 (나의 妻?가 매득한 下塞達 馬興洞員에 있는 논 여덟 필지 볍씨 아홉 되부치기)

⑥ 塞達里東南五老員, 父主買得田, 皮牟隆斗付只 (아버지께서 매득한 색달리 동남 五老員에 있는 겉보리 여섯 말부치기)

⑦ 里內員舊家基元處現處買得田, 皮牟伍斗付只 (元處現으로부터 매득한 里內員 옛 집터 겉보리 다섯 말부치기)

⑧ 資生條以, 家夫買得舊家代田, 里內員, 皮牟貳斗付只 (資生條로 家夫(남편)가 매득한 옛 집터와 里內員 겉보리 두 말부치기)

넷째는 家坮(家坐)田이다. 이는 祖上傳來의 성격을 갖는다고도 할 수 있다.

① 中文里內員, 家代田, 牟種壹斗付只 (중문리 里內員 家坮田 보리씨 한 말부치기)代는 坮의 잘못.
② 家坐東壹片, 麻子伍升付只 (집터왓 동쪽 한 뙈지 삼씨 다섯 되부치기)
③ 家坐田, 祖上流來之田, 四寸奴友先處買得里內員, 參斗付麻子 (4촌 奴 友先으로부터 매득한 里內員 祖上流來 家坐田 삼씨 세 말 부치기)
④ 外邊祖上流來家坮田 (외가에서 어머니 몫으로 가져 온 조상 流來의 家坮田)

다섯째는 스스로 개간한 땅이다.

① 矣父自起耕食爲有遣, 金路員, 粟種壹斗付只 (저의 아버지가 스스로 개간하여 갈아 먹던 金路員 조씨 한 말부치기)
② 自起田, 中文里北邊員, 皮牟參斗付只 (스스로 개간한 밭 중문리 北邊員 겉보리 세 말부치기)

여섯째는 墓坐·祭條·掃祭田이다.

① 金本之洞, 其祖母墓坐田壹邊價捧爲有在, 澤園員, 粟種柒升付只 (金本之洞이 그 祖母 墓坐田 한 쪽의 값으로 받은 澤園員 조씨 일곱 되부치기)
② 矣祖父祭條田, 無路員兩田庫, 合皮牟玖斗付只 (저의 祖父 祭條田 無路員 두 곳 합계 겉보리 아홉 말부치기)
③ 舅祖父掃祭田壹庫, 在於旨乙田員, 粟種壹斗參升付只 (旨乙田員에 있는 시할아버지 掃祭田 한 곳 조씨 한 말 세 되부치기)

일곱째, 기타

① 賣主之養家田, 在於中文里, 所謂廣枉乭員, 粟種參升付只 (중문리 이른바 廣枉乭員에 있는 賣主의 養家田 조씨 세 되부치기)
② 氏家則給田, 中文里下野改葬基員, 牟種拾參斗付只(氏(媤?)家에서 준 중문리 下野 개장터 보리씨 13 말부치기)

③ 妻父前別得田, 在巨子屹員, 粟種壹斗付 (巨子屹員에 있는 妻父로부터 別得한 조씨 한 말부치기)

Ⅲ. 田畓賣買의 原因

전답매매의 原因으로는 ① 상대방으로부터 물건을 貸用 또는 貸出한 후 그 負債을 辨濟(報償)하기 위한 것이 있고, ② 用途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단지 要用所致, 혹은 別有要用處라 한 것이 있으며, ③ 生計無路, 年老窮迫, 年事慘惑 혹은 老母供養 등으로 표현된 貧窘과 凶年으로 인한 것이 있는가 하면, ④ 喪葬 비용의 辨出 즉, 山債와 喪債, ⑤ 同色馬[5]와 所食還穀 등 租稅條의 備納, ⑥ 기타 등으로 되어 있다. 이하 인용문기에서는 내용 설명상 불필요한 4표, 증인, 필집 등을 생략한다.

1. 負債의 辨濟

① 康熙參拾肆年乙亥貳月初陸日姪子益山處明文.

右明文事段, 同人處陸禾牝牛壹首及正木壹匹等物貸用之後, 價本家代田麻種貳斗伍升付只… 及參間家壹便等以, 永永報給爲去乎…卞正事.

田及家主 異姓三寸叔父 許華一(手決)

위 明文은 康熙 34년, 즉 肅宗 21년(1895) 2월 6일에 田 및 家主 異姓三寸叔父 許華一이 姪子 益山에게, "여섯살배기 암소 한 마리와 正木 1疋 등을 貸用한 후, 그 값으로 家垈田 麻種 (삼씨) 2말 5되부치기 및 3간 집 한 채를 영원

5) 同色馬란 李健의 《濟州風土記》에, "所謂牧子者, 卽授馬而爲之牧之者也. 夏秋草長之時, 則馬無殞斃之患, 而如陸冬春初, 草枯之時, 則馬之飢餓而死者, 不可勝紀. 如有致死之馬, 則牧子者, 卽剝其皮以納于官, 官以馬籍與憑考, 毛色相符然後, 乃捧其皮以故失馬載籍. 或有毛色差錯, 皮毛有損傷之痕, 則退之不捧, 卽徵其馬於牧子, 謂之同色馬", 라 한 것처럼, 목자는 말(馬)이 致死했을 경우에 그 가죽을 벗겨서 官에 바치는데, 官에서는 馬籍에 올라 있는 것과 대조하여 毛色이 같아야 받아들여서 故失馬(事故馬)로 처리한다. 그러나 毛色이 틀리거나 毛皮에 손상이 있을 경우에는 물리쳐서 받지 아니하고 그 대가로 牧子들에게 말을 징수하는데, 이를 同色馬라 하였다. 이것이 牧子들에게는 큰 苦役이 되었다.

히 보급한다"는 내용이다.

② 康熙參拾陸年丁丑拾貳月拾伍日校生高允重前明文.

右明文事段, 有報債之故, 同前禾柒雌牛貸得, 無弊報給之後, 價本段 他無拮据之策乙仍于, 勢不得已, 矣父自起耕食爲有在, 金路員粟種壹斗付只, …永永報給爲去乎, …卞正爲乎事.

田主 正兵 文汝林 (左手寸)

위 明文은 康熙 36년, 즉 肅宗 23년(1697) 12월 15일에 田主 正兵 文汝林이 校生 高允重에게 "빚을 갚을 연고가 있어 同前(高允重)으로부터 일곱살배기 암소 한 마리를 貸得하여 폐해 없이 報給한 후, (암소) 값은 달리 拮据할 대책이 없기에 하는 수 없이 저 (文汝林)의 아버지가 스스로 일구어 (自起) 갈아먹던 金路員 粟種 한 말부치기를 영원히 보급한다"는 내용이다.

③ 乾隆貳年丁巳正月初參日高允重處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 同人處正木參疋貸用之後, 價木段出處無路, 故勢不得已, 丁稀川員祖上傳來耕食畓, 陸片合租種柒升付只, … 又同員皮牟壹斗田付只, …兩庫田畓, …永永報給及本文記段, 他田并付乙仍于, 不得許給爲去乎, …卞正事.

田畓主 金重寶 (手決)

위 明文은 乾隆 2년, 즉 英祖 13년(1737) 정월 3일에 田畓主 金重寶가 高允重에게, "正木 3疋을 貸用한 후, 그 값을 마련한 길이 없으므로 하는 수 없이 丁稀川員에 있는 조상전래로 갈아 먹던 논(畓) 6片(판이, 筆地), 합계 租種(볍씨) 7되부치기와 同 지경에 있는 皮牟(겉보리) 한 말 부치기 밭 두 곳을 영원히 보급하고, 本文記(舊文記)는 다른 밭이 함께 기재되어 있는 탓으로 許給하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④ 乾隆拾壹年乙丑三初二日 安詣哲處明文.

右明文事段, 同人處正木二疋貸用之後, 價本報給段, 買得邊老川岳員皮牟伍斗付只, …加時磊員粟種伍升付… 二庫永永報給… 辨正事.

自筆執田主 梁魏首(手決)

위 明文은 乾隆 11년, 즉 英祖 22년(1746) 3월 2일에 田主 梁魏首가 安詣哲에게 "正木 2疋을 貸用한 후, 그 값으로 買得한 邊老川岳員에 있는 皮牟 5되 부치기와 加時磊員 粟種 5되부치기를 영원히 보급한다"는 내용이다.

⑤ 乾隆肆拾壹年丙申拾月貳拾陸日 高昶敬前明文.

右明文事段, 同人前正木貳疋參拾尺捧用後, 價本段 祖上流來大浦里西廣所只員 牟種壹石付, …永永放賣爲乎矣, 本文記段并爲流來田故不得許與, …卞正事.

田主 業武 高完福 (手決)

위 明文은 乾隆 41년, 즉 英祖 52년(1776) 10월 26일에 田主 業武 高完福이 高昶敬에게, "正木 2疋 30尺을 捧用한 후, 그 값으로 祖上流來의 大浦里西廣所只員 牟種 한 섬부치기를 영원히 放賣하되, 本文記는 流來田이 함께 기재되어 있으므로 許與하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⑥ 道光十三年癸巳四月日高台伯處明文.

右明文事段, 右人處正木拾伍疋貸用後, 價本段, 塞達里東南五老洞員, 父主買得田, 皮牟六斗付只, …本文記并以永永報給, …卞正事.

田主自筆 高命說(手決)

위 明文은 道光 13년, 즉 純祖 33년(1833) 4월(날자 누락)에 田主 高命說이 高台伯에게 "正木 15疋을 貸用한 후, 그 값으로 父主께서 買得한 塞達里東南 五老洞員의 皮牟 6말부치기를 本文記와 아울러 영원히 보급한다"는 내용이다.

2. 要用所致

⑦ 康熙貳拾玖年庚午柒月初柒日正兵高莫南處明文.

右明文事段, 要用所致以, 同人處陸升木陸□貸用, 而價本無策乙仍于, 柳益山處買得爲在, 塞達里田員田牟種捌斗付, …永永放賣報給爲遣, …卞正事.

田主自筆 書員 姜直(手決)

위 明文은 康熙 29년, 즉 肅宗 16년(1890) 7월 7일에 田主 書員 姜直이 正兵 高莫男에게, "要用所致로 同人에게 陸升木 6□을 貸用하고 그 값을 마련할 대책이 없는 탓으로 柳益山에게 買得한 塞達里田員 牟種 8말부치기를 영원히 방매하여 보급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용도는 불명이다.

⑧ 康熙三十五年丙子四月二十七日李燦前明文.

右明文事段, 要用所致以, 同人處去己巳年分, 四禾雌牛壹口貸用, 而價本段, 中文里北邊員田, 皮牟陸斗落只, …及同員皮牟貳石落只… 田庫乙用良, 永永報給爲去乎… 卞正爲乎事.

田主 吳智壽(手決)

위 明文은 康熙 35년, 즉 肅宗 22년(1696) 4월 27일에 田主 吳智壽가 李燦에게, "要用所致로 지난 己巳年(肅宗 15년) 쯤에 4살배기 암소 한 마리를 대용하고 그 값으로 中文里 北邊員 皮牟 여섯 말지기와 同 지경의 皮牟 두 섬지기를 영원히 보급한다"는 내용이다. 여기서는 落只(지기)라는 단위를 사용한 것이 주목된다.

⑨ 康熙參拾柒年戊寅參月拾壹日李孝積處明文.

右明文事, 要用所致以, 同人處正木肆拾尺壹疋貸用爲遣, 價本段, 金本之同其祖母墓坐田壹邊價捧爲有在, 澤園員粟種柒升付只… 永永報給放賣爲去乎… 卞正事.

田主自筆 鄭世榮 (手決)

위 明文은 康熙 37년, 즉 肅宗 24년(1698) 3월 11일에 田主 鄭世榮이 李孝積에게, "要用所致로 正木 40尺 짜리 1필을 대용하고 그 값으로 金本之同의 祖母墓坐田 壹邊 값으로 받았던 澤園員 粟種 7 되부치기를 영원히 보급방매한다"는 내용이다. (用途不明)

⑩ 康熙肆拾伍年丙戌正月二十三日朴承元處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 要用所致以, 中文里內員家坐田麻種壹斗付只… 同家代田正木貳疋貸得之後… 永永放賣爲去乎… 卞正爲臥乎事.

家代田主 金友先(左手寸)

위 明文은 康熙 45년, 즉 肅宗 32년(1706) 정월 23일에 家垈田主 金友先이 朴承元에게 "要用所致로 中文里內員 家垈田 麻種 한 말부치기를 正木 두 필을 貸得한 후 영원히 放賣한다"는 내용이다. (用途不明)

⑪ 康熙肆拾伍年丙戌貳月拾柒日安訓處明文.

右明文事段, 要用所致以 同人處牛壹首貸用後, 價本段, 他無報給之物乙仍于, 吾矣衿下祖上田私堂員伏在, 粟種壹斗伍合落只… 永永報給爲去乎… 卞正事.

田主 金玄(左手寸)

위 明文은 康熙 45년, 즉 肅宗 32년(1706) 2월 17일에 田主 金玄이 安訓에게, "요용소치로 소 한 마리를 貸用한 후, 달리 보급한 물건이 없기에 저의 衿下祖上田 私堂員에 있는 粟種 한 말 5홉지기로 영원히 보급한다"는 내용이다.

⑫ 康熙肆拾玖年庚寅貳月貳拾參日異姓四寸妹婢生今處明文.

右明文事段, 要用所致以, 同人處木綿肆拾尺貳疋貸用後, 價本段, 祖上由來爲有在, 里內員麻種貳斗落只… 同人處上頂木綿貳疋價, 永永報給爲去乎… 卞正事.

田主 金友光(左手寸)

위 明文은 康熙 49년, 즉 肅宗 36년(1710) 2월 23일에 田主 金友光이 異姓四寸妹 婢 生今에게, "요용소치로 木綿 40尺 짜리 두 필을 대용한 후 그 값으로 祖上流來의 里內員 麻種 두 말지기를 영원히 보급한다"는 내용이다.

⑬ 雍正十二年甲寅四月初七日高瑞鑑處明文.

右明文事段, 要用所致以, 同人處粟貳石肆斗正木壹疋等物, 貸得用下之後, 價本段, 舅父前衿得爲有在, 無仇於尾員, 皮牟拾貳斗付只… 永永放賣爲乎矣, 本文記段, 他田并付故不得許給爲去乎… 卞正事.

田主 高氏代子 自筆執 玄道綱(手寸)

위 明文은 雍正 12년, 즉 英祖 10년(1734) 4월 7일에 田主 高氏代子 玄道綱이 高瑞鑑에게, "요용소치로 粟 2섬 4말과 正木 한 필을 貸得하여 用下한 후

그 값으로 舅父로부터 몫으로 받은(衿得) 無仇於尾員 皮牟 12말 부치기를 영원히 放賣하되, 本文記는 다른 밭이 함께 기재되어 있어 넘겨주지 (許給) 못한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본 明文, 즉 新文記만을 작성하여 준다는 것이다.

⑭ 乾隆元年丙辰五月初壹日寡婦金氏處明文.

右明文事段, 婢愛今要用所致, 祖上流來田廣王乭員 粟種參升付田庫, 同人處粟貳石捧上後, 許給爲去乎… 及本文記并以 永永放賣爲去乎…卞正事.

田主 婢 愛今 (左手寸)

위 明文은 乾隆 元年, 즉 英祖 12년(1736) 5월 1일에 田主 婢 愛今이 寡婦 金氏에게 "자신(婢 愛今)의 요용소치로 祖上流來田 廣王乭員 (너분왕돌왓?) 粟種 3되부치기 밭곳을 동인(金氏)에게 粟 2섬을 받은 후 本文記와 아울러 영원히 방매한다"는 내용이다. 여기서는 本文記(舊文記)도 함께 넘겨주고 있다.

⑮ 乾隆陸年辛酉捌月拾玖日三寸前明文.

右明文事段, 別有要用之處是乎矣, 出處無路, 故同前正木參疋貸用之後, 價本段, 他處無路乙仍于, 父主衿得爲在, 茂九尾員皮牟拾斗付只… 永永放賣爲乎矣, 甲子爲始執耕爲乎旀 本文記段, 同田一邊并付, 故不得許施爲去乎… 卞正事.

田主 姪子 玄道顯(手決)

위 明文은 乾隆 6년, 즉 英祖 17년(1741) 8월 19일에 田主 姪子 玄道顯이 三寸에게, "별도로 요용한 곳이 있으되 나올 곳이 없으므로, 三寸에게 正木 3필을 대용한 후 그 값을 마련한 길이 없기에 父主(아버지)로부터 衿得(몫으로 받은)한 茂九尾員 皮牟 10말부치기를 영원히 방매하되, 甲子年부터 시작하여 執耕하며, 本文記는 同田의 한 쪽이 함께 부기되어 있으므로 넘겨주지(許施) 못한다"는 내용이다.

⑯ 乾隆貳拾年丙子九月拾伍日高召史處明文.

右明文事段, 別有要用之處, 而他無變通, 故同人處正木參疋半貸用之後, 價本段, 妻邊衿給是在, 塞達所掌詢巨員皮牟伍斗付只… 同人處永永放賣爲去乎, 本文記段他田并付, 故不得許與爲去乎… 卞正事.

田主 梁道文(手決)

위 明文은 乾隆 20년, 즉 英祖 31년(1755) 9월 15일에 田主 梁道文이 高조이(召史)에게, "특별히 要用한 곳이 있으나 달리 변통할 수 없으므로, 同人(高召史)에게 正木 3필 半을 대용한 후 그 값으로 妻邊衿得, 즉 妻家에서 妻 몫으로 준 塞達所掌詢巨員 皮牟 5말부치기를 영원히 방매하되, 本文記는 他田이 함께 부기되어 있으므로 넘겨주지 (許與) 못한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年代表記에 있어 乾隆 20년과 丙子는 1년의 차이가 있어 어느 하나가 誤記임을 알 수 있다.

⑰ 乾隆參拾玖年乙未八月初十日李植根處明文.

右明文事段, 要用所致以, 同人處正木壹疋半貸出後, 價本段, 外家流來田, 上代員皮牟陸斗付只… 植根處永永放賣爲去乎, 本文記段, 他田并付故不得許給爲去乎… 卞正事.

田主 吳繼姬(手決)

위 明文은 乾隆 39년, 즉 英祖 50년(1774) 8월 10일에 田主 吳繼姬가 李植根에게, "요용소치로 正木 1필 반을 대출한 후, 그 값으로 外家流來田 上代員皮牟 6말부치기를 동인에게 영원히 방매하되, 本文記는 他田이 并付되어 있는 탓으로 許給하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연대표기에 있어서 乾隆 39년과 乙未는 1년 차이가 있다.

⑱ 嘉慶貳拾貳年(干支누락)五月初一日吳氏處明文.

右明文事段, 同人處要用所致以, 正木拾疋貸用後, 價本段, 他無報給之勢故矣買得是在, 中文東邊員皮牟結斗付… 本文記并以永永放賣爲去乎… 卞正事.

田主 自筆執 康宗卷(手決)

위 明文은 嘉慶 22년, 즉 純祖 17년(1817) 5월 1일에 田主 康宗卷이 吳氏에게 "요용소치로 正木 10疋을 대용한 후, 그 값을 달리 갚을 수 없는 형편이므로 本人이 買得한 中文東邊員 皮牟 結斗(소가 4일간 갈 수 있는 면적) 부치기를 本文記와 아울러 영원히 방매한다"는 내용이다.

⑲ 道光拾壹年丁酉柒月貳拾肆日李仁孫處明文.

右明文事段, 矣身要用所致, 右人處正木柒疋貳拾伍尺貸用後, 價本段以外家衿得是在, 中文里下野改葬基員, 牟種拾參斗付只… 永永報給, 而本文記段, 葉作中并付矣…卞正事.

田主 文榮大(手決)

위 明文은 道光 11년, 즉 憲宗 3년(1837) 7월 24일에 田主 文榮大가 李仁孫에게 "本人(矣身)이 요용소치로 右人(李仁孫)에게 正木 7疋 25尺을 대용한 후, 그 값으로 外家로부터 衿得한 中文里 下野改葬基員 牟種 13말 부치기를 영원히 보급하지만 本文記는 葉作記 중에 함께 附記되어 있다"는 내용이다.

⑳ 道光貳拾肆年癸卯八月拾捌日高處明文.

右明文事段, 矣身同人處, 要用所致, 故正木貳疋貸出用下後, 價本變通無路, 故報給之物, 何元洞粟種壹斗付只內, 西邊伍升付只段, 同人處割送爲乎稱, 四標段, 東竇者田南吳成五田西梁泗洛田北韓永番田, 四標分明田庫乙, 他人處永永放賣是矣, 本記段并付放賣爲去乎… 卞正 爲乎事.

田主 韓時祿. 筆執 韓善祿 (手決 없음)

위 明文은 道光 14년, 즉 憲宗 9년(1843) 8월 18일에 전주 韓時祿이 高氏에게 "이 몸이 同人에게 요용소치로 正木 2필을 빌려 쓴 후, 그 값을 변통할 길이 없으므로, 보급할 물건으로 何元洞員 粟種 한 말부치기 내에, 西邊 5되부치기는 同人에게 割送하며, 나머지 일부는 他人에게 영원히 방매하되, 本文記도 함께 付記하여 방매한다"는 내용이다. 즉 粟種 한 말부치기를 둘로 쪼개어 한 쪽으로는 빚을 갚고 나머지 한쪽은 다른 사람에게 방매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道光 9년과 癸卯年은 1년 차이가 있어 둘 중 하나는 誤記이다.

㉑ 同治九年庚午正月二十三日高應萬處明文.

右明文事段, 吾要用所致, 故右人處白木玖疋貸用後, 價報段烟臺員, 皮牟壹斗付只… 本文記并以永永放賣爲去乎 … 憑考事.

田主 自筆 姜用磕(手決)

위 明文은 同治 9년, 즉 高宗 7년(1870) 정월 23일에 田主 姜用磕이 高應萬에게, "요용소치로 白木 9필을 대용한 후, 그 값으로 烟臺員 皮牟 한 말부치

기를 本文記와 아울러 영원히 방매한다"는 내용이다.

3. 貧寒과 凶年

㉒ 康熙三十八(年)己卯十二月二十六日高允重處明文.

右明文事段, 矣外祖上流來, 非乙於池西邊員, 粟種伍升付只… 田庫乙, 六寸孫婿金汝談處, 成婚日別給爲有矣, 矣身年老無依之人, 連値凶年生理無路之際, 同人前自斃大牛及雜穀伍斗貸食後, 價本出處無路乙仍于, 不得已此田庫乙, 同允重處永永報給爲去乎…卞正事.

田主 正兵 文德男(右手寸)

위 明文은 康熙 38년, 즉 肅宗 25년(1699) 12월 26일에 田主 正兵 文德男이 高允重에게, "본인의 外家에서 조상 대대로 내려온 非乙於池西邊員 粟種 5되 부치기 밭곳을 6촌 孫婿 金汝談에게 成婚日 別給하였으되, 이몸이 나이가 늙고 의지할 데 없는 사람인데다 계속 흉년을 당하여 살아나갈 길이 없을 때에 同人(高允重)으로부터 自斃한 큰 소와 잡곡 5 말을 빌려 먹은 후 그 값을 마련할 길이 없기에 부득이 이 밭(金汝談의 成婚日에 別給했던 밭)을 영원히 報給한다"는 내용이다.

㉓ 康熙參拾玖年庚辰正月初柒日高允重處明文.

右明文事段, 矣身値此凶荒資生爲難乙仍于, 妻叔祖母成婚別給爲在, 中文里北邊上基員, 皮牟貳斗付只… 價本正木壹疋准計捧上後, 同允重處永永放賣爲去乎…卞正事.

田主 私奴 海敏 (左手寸)

위 明文은 康熙 39년, 즉 肅宗 26년(1700) 정월 7일에 田主 私奴 海敏이 高允重에게, "이 몸이 흉년을 당하여 資生이 어려운 탓으로, 妻叔祖母가 成婚때에 別給한 中文里 北邊上基員 皮牟 2말부치기 값으로 正木 한 필을 일정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받은 후 영원히 방매한다"는 내용이다.

㉔ 康熙肆拾伍年丙戌三月初玖日高允重處明文.

右明文事段, 矣身値此凶荒生涯無責, 故不可不家坐東壹片麻子伍升付只…

價本則粟貳拾斗及木綿拾尺等物, 價布貳疋價以折價後, 准數捧上, 而同允重處永永放賣爲去乎…卞正事.

田主 私婢 草生(右手寸)

위 明文은 康熙 45년, 즉 肅宗 32년(1706) 3월 9일에 田主 私婢 草生이 高允重에게 "이몸이 흉년을 당하여 살아나갈 대책이 없으므로, 家坐 동쪽의 한 필지(片)인 麻子(삼씨) 5되부치기 값으로 粟 20斗와 木綿 10尺을 價布 두 필 값으로 가격을 정한 후 准數하여 받고 영원히 방매한다"는 내용이다.

㉕ 康熙伍拾參年甲午正月初捌日高允重處明文.

右明文事段, 今此年事之慘酷之故, 勢不得已, 外邊祖上流來家代田, 則矣妹依家居生是如可, 上典入來收貢之際, 雄馬壹匹壯牛壹首備給然後, 矣身處家代田及家舍并以報給之田, 故里內員麻子參斗付只… 四標分明而價本則壯雄牛壹首及正木貳疋捧上後, 同前永永放賣爲乎矣, 文記段他田地并付, 故不得許給, 而論理成文以給爲置…卞正事.

田主 許成落(手決)

위 明文은 康熙 53년, 즉 肅宗 40년(1714) 정월 8일에 田主 許成落이 高允重에게, "年事(農事作況)가 참혹하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外邊, 즉 妻家에서 母衿(어머니 몫)으로 가져온 祖上流來 家垈田, 즉 저의 누이동생이 집을 얻어 살다가 上典이 들어와 身貢을 거둘 때에 숫말 한 필과 건장한 소 한 마리를 마련해 준 후, 이몸에게 家垈田 및 家舍와 아울러 報給한 밭이므로, 里內員 麻子 3말부치기 값을 건장한 숫소 한 마리 및 正木 2필을 받은 후 영원히 방매하되, (本)文記는 다른 田地가 함께 기재되어 있으므로 넘겨주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㉖ 康熙伍拾參年甲午二月初拾日高允重前明文.

右明文事段, 値此大無凶荒資生無路, 故同前壯雌牛壹首貸出屠食資生之後, 他無報給乙仍于, 祖上田里內員皮牟參斗付只… 及里東邊員皮牟肆斗付只… 兩庫乙, 貸出壯雌牛價, 永永報給放賣爲置…卞正事.

田主 文厚得(左手寸)

위 明文은 康熙 53년, 즉 肅宗 40년(1714) 2월 10일에 田主 文厚得이 高允重

에게 "큰 흉년을 당하여 資生할 길이 없으므로, 同前(高允重)의 건장한 암소 한 마리를 대출하여 屠食한 후, 달리 報給할 길이 없기에 祖上田 里內員 皮牟 3말부치기와 里東邊員 皮牟 4말부치기 두 곳을 대출한 소값으로 영원히 보급하여 방매한다"는 내용이다.

㉗ 康熙伍拾參年甲午二月拾參日高允重處明文.

右明文事段, 値此大無凶荒, 家父身死而□□未成子息等, 資生爲難乙仍于, 資生條以, 家父買得家代田, 里內員皮牟貳斗付只… 價本壯雌牛壹首及正木綿壹疋, 准數捧上後, 同人處永永放賣爲乎矣, 買得本文記并以許給爲置…卞正事.

田主 婢 莫今(右手寸)

위 明文은 康熙 53년, 즉 肅宗 40년(1714) 2월 13일에 田主 婢 莫今이 高允重에게 "큰 흉년을 당하여 家父(남편)가 죽고 未成한 자식들이 資生하기 어려운 탓으로, 資生條로 家父가 買得한 家垈田 里內員 皮牟 두 말부치기 값을 건장한 암소 한 마리와 正木 한 필을 准數하여 받은 후 영원히 방매하되, 買得한 本文記와 아울러 許給한다"는 내용이다.

㉘ 康熙伍拾參年甲午三月貳拾玖日高允重前明文.

右明文事段, 當此大無凶荒, 勢難資生, 故同前壯雌馬壹匹及正木壹疋貸出資生後, 價無路乙仍于, 不得已家坐田祖上流來之田, 四寸奴友先處買得里內員參斗付麻子… 四標分明田, 價本右次貸得馬壹匹正木壹疋價, 買得文記并以, 同前永永放賣報給爲置…卞正事.

田主 婢 生今(右手寸)

위 明文은 康熙 53년, 즉 肅宗 40년(1714) 3월 29일에 田主 婢 生今이 高允重에게, "큰 흉년을 당하여 資生하기 어려움으로 同前의 壯雌馬 한 필과 正木 한 필을 대출하여 資生한 후 값을 갚을 길이 없기에 부득이 祖上流來의 家坐田으로 4촌 奴 友先에게 買得한 里內員 麻子 3말부치기를 위의 貸得한 말 한 필과 正木 한 필 값으로 買得한 文記와 아울러 영원히 방매하여 보급한다"는 내용이다.

㉙ 康熙五十三年甲午四月初五日幼學姜世翼前明文.

右明文事段, 値此凶荒, 父母具不免飢死之患, 人子之情豈無寒心哉. 勢不得已, 同前壯雌牛壹首及正木貳疋貸得, 無弊供養之後, 價本段矣母衿得是在, 卞限川員壹斗畓租種壹斗付只… 畓庫, 同前永永放賣爲乎矣, 本文記段, 他田并付許與不得爲去乎…辨正事.

田主 吏房 金業(手決)

위 明文은 康熙 53년, 즉 肅宗 40년(1714) 4월 5일에 畓主 吏房 金業이 幼學 姜世翼에게 "흉년을 당하여 부모가 다 飢死之患을 면하지 못하니 사람의 자식된 情理에 어찌 한심함이 없겠는가? 부득이 同前의 건장한 소 한 마리와 正木 두 필을 貸得하여 별일없이 공양한 후, 그 값으로 본인의 어머니 몫으로 받은 卞限川員의 한 필지(片) 畓 租種 한 말부치기를 同前에게 영원히 방매하되, 本文記는 다른 밭이 함께 기재되어 있어 許與(引渡)하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㉚ 雍正拾年壬子柒月拾玖日高瑞鑑處明文.

右明文事段, 當此凶年, 女矣身年近八十老人, 生活無路乙仍于, 同人處皮牟貳石及正木貳拾尺捧上後, 價本段里內員皮牟貸斗付只… 同人處永永放賣報給爲去乎, 本文記段, 他田并付故不得許給爲去乎…卞正事.

田主 安召史(右手寸)

위 明文은 雍正 10년, 즉 英祖 8년(1732) 7월 19일에 田主 安召史가 高瑞鑑에게, "흉년을 당하여 女(자신)의 몸은 나이가 80에 가까운 老人으로 생활할 길이 없기에, 同人에게 皮牟 두 섬과 正木 20尺을 받은 후, 그 값으로 里內員 皮牟 두 말부치기를 동인에게 영원히 방매하되, 본문기는 他田이 함께 기재되어 있어 許給하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㉛ 乾隆玖年甲子參月初捌日高瑞鑑前明文.

右明文事段, 矣身本以至貧之人, 當此凶歲生涯無策, 同前正木壹疋參拾尺貸出, 反賣資生而價段, 矣母衿得是遣, □牛洞員粟種捌升付… 永永報給而本文記段, 他田并付衿記, 故不得許給爲去乎… 卞正事.

田主 寺奴 文完(左手寸)

위 明文은 乾隆 9년 즉 英祖 20년(1744) 3월 8일에 田主 寺奴 文完이 高瑞鑑에게, "이몸은 본래 지극히 가난한 사람으로 흉년을 당하여 살아나갈 계책이 없기에, 同前으로부터 正木 한 필 30尺을 대출하고 되팔아서 資生한 후 그 값으로 外家에서 어머니 몫으로 받은 □牛洞員 粟種 8되부치기를 영원히 보급하되, 본문기는 他田이 衿記에 함께 기재되어 있어 넘겨주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㉜ 乾隆參拾伍年庚寅七月十二日高瑞鑑處明文.

右明文事段, 當此荒年資生無路, 故同人處壯雌牛壹首貸出資生之後, 價本段祖上流來爲有在, 無巨於未員皮牟貳拾斗付內, 南邊拾斗付只段, 養祖母前衿得是遣, 北邊陸斗付只段 生祖母前許給是遣, 又北邊肆斗付只段, 無後女三寸掃祭條田也… 參庫并以同高瑞鑑處永永放賣爲乎矣, 本文記段和會中在錄, 故不得許給爲去乎…卞正事.

田主 玄莘衡(手決)

위 明文은 乾隆 35년, 즉 英祖 46년(1770) 7월 12일에 田主 玄莘衡이 高瑞鑑에게, "흉년을 당하여 資生할 길이 없으므로, 同人에게 건장한 암소 한 마리를 貸出하여 資生한 후, 값은 祖上 대대로 내려오는 無巨於未員 皮牟 20斗부치기 내에, 남쪽 10斗부치기는 養祖母로부터 衿得하였고, 북쪽 6斗부치기는 生祖母에게서 許給하였으며, 또 북쪽 4斗부치기는 無後한 女三寸의 掃祭條인데, 이 세 곳을 아울러 高瑞鑑에게 영원히 방매하되, 本文記는 和會文記 중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許給하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㉝ 乾隆參拾伍年庚寅七月拾肆日高瑞鑑處明文.

右明文事段, 當此荒年生道無路, 故同人處壯雌牛壹首貸出資生後, 價本段勢不得已, 七日泉員衿得田, 粟種壹斗付只… 田庫, 同瑞鑑處永永放賣爲去乎, 本文記段衿記中并付, 故不得許給爲去乎…卞正事.

田主 梁緖庭(喪不着)

위 明文은 乾隆 35년, 즉 英祖 46년(1770) 7월 24일에 田主 梁緖庭이 高瑞鑑에게, "흉년을 당하여 살아 나갈 방도가 없으므로 同人에게 건장한 암소 한 마리를 貸出하여 資生한 후, 값은 하는 수 없이 七日泉員에 있는 衿得田 粟種

한 말부치기를 高瑞鑑에게 영원히 방매하되, 본문기는 衿記 중에 함께 기재되어 있으므로 許給하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㉞ 乾隆伍拾玖年甲寅二月二十五日高宗濟處明文.

右明文事段, 矣身當此凶年資生無路, 故同人處貳疋價粟貳石及正木壹疋, 合參疋貸出用下後, 價本段他處變通無路, 故勢不得已祖上流來田, 大靜塞達里東南五老洞員, 皮牟六斗付只…田庫, 同人處永永放賣爲乎矣, 本文記段都許入錄, 故不得許給爲乎矣…卞正事.

田主 自筆執 金東球(手決)

위 明文은 乾隆 59년, 즉 正祖 18년(1794) 2월 25일에 田主 金東球가 高宗濟에게, "이몸이 흉년을 당하여 資生할 길이 없으므로 同人에게 正木 2疋 값의 粟 2石 및 正木 1疋, 합계 3疋을 貸出하여 用下한 후, 값은 다른 곳에서 변통할 길이 없으므로 하는 수 없이 祖上 대대로 내려오는 大靜 塞達里 東南 五老洞員의 皮牟 6 말부치기 밭을 同人에게 영원히 방매하되, 본문기는 都許文記에 入錄되어 있으므로 許給하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㉟ 同治柒年己巳二月二十一日高應萬處明文.

右明文事段, 矣女當此荒年生道無路, 故右人處白木伍疋貸用後, 價本段出處難處, 故氏家則給田, 中文里下野改葬基員, 牟種拾參斗付只… 永永報給, 而文并以許給爲去乎…卞正事.

田主 金召史(右手寸)

위 明文은 同治 7년, 즉 高宗 5년(1868) 2월 21일에 田主 金조이(召史)가 高應萬에게, "矣女(자신)가 흉년을 당하여 살아 나갈 방도가 없으므로 右人(高應萬)에게 白木 5疋을 貸用한 후, 값은 出處가 難處하므로 氏家(媤家?)에서 준 中文里 下野改葬基員 牟種 13斗부치기 밭을 영원히 보급하되, 본문기와 아울러 許給한다"는 내용이다.

4. 山債와 喪債

㊱ 雍正貳年甲辰六月初拾日高允重處明文.

右明文事段, 奴汝立處買得是在, 巨子屹員粟種壹斗付只… 癸巳年分, 同人妻母葬埋而價, 則參疋以折價結約之後, 癸卯年分, 退雌牛壹首貳疋折價給與是遣, 壹疋木段, 今春良中給與, 故永永許給放賣爲乎矣, 買得本文記段, 他田并付, 故爲不(不得의 誤)許給, 而論理成文爲置… 卞正事.

田主 自筆執 高門繼(手決)

위 明文은 雍正 2년, 즉 景宗 4년(1724) 6월 10일에, 田主 高門繼가 高允重에게, "奴 汝立에게 買得한 巨子屹員 粟種 1斗부치기를, 癸巳年(肅宗 39년, 1713) 쯤에 同人의 妻母를 埋葬하고 값은 (正木) 3疋로 정하여 結約한 후, 癸卯年(景宗 3년 1723)에 암소 한 마리를 2疋로 값을 정하여 급여하고, 1疋의 正木은 금년 봄에 급여하여 영원히 방매하되, 買得한 本文記는 다른 밭이 함께 기재되어 있으므로 許給하지 못하고 事理를 논의하여 文記를 작성한다"는 내용이다.

㊲ 乾隆捌年(干支누락)拾貳月拾伍日良女月良處明文.

右明文事段, 當此荒年連値父喪是遣, 亦且亦且喪妻, 而不勝支堪之中, 勢不得已, 祖上流來畓, 予屹洞員十片合租種壹斗參升付只內, 北片捌片合租種玖升付只… 價本段正木柒疋准捧後, 同人處永永放賣爲乎矣, 本文記段, 他畓并付故不得許與爲置…卞正事.

田主 高益興(手決)

위 明文은 乾隆 8년, 즉 英祖 19년(1743) 2월 15일에 畓主 高益興이 良女 月良에게 "흉년을 당한 데다가 계속하여 父喪을 만나고 또 喪妻까지 하여 支堪함을 이기지 못하는 중에, 부득이 조상 流來畓 予屹洞員 10필지 합계 租種 한 말 세 되부치기 내에, 북쪽의 8필지 합계 租種 9되부치기를 正木 7필 값으로 계산하여 받은 후, 同人에게 영원히 방매하되, 본문기는 他畓이 함께 기재되여 있어 引渡하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㊳ 乾隆拾伍年庚午貳月初九日李重澤前明文.

右明文事段, 矣母喪價出處無路乙仍于, 右人前正木壹疋參拾尺得用後, 價本段斬南同山員, 粟種伍升付田… 右人前永永放賣爲去乎… 卞正事.

田主 文卜洞(左手寸)

위 明文은 乾隆 15년, 즉 英祖 26년(1750) 2월 9일에 田主 文卜洞이 李重澤에게, "어머니 喪禮 비용을 마련할 길이 없는 탓으로, 右人(李重澤)에게 正木 1疋 30尺을 얻어 쓴 후, 그 값으로 斬南同山員 粟種 5되부치기를 영원히 방매한다"는 내용이다.

㊴ 乾隆肆拾參年戊戌拾貳月武拾(탈락).

右明文事段, 柰木里員占山之後(탈락), 買得耕食, 矣婢良香處買得田中, 同人用(탈락)及故果許, 而用山後移云, 山價正木參(탈락). 則雖是情意之□, 何吾當非單同姓, 常時戚分之下相厚之間, 山債惟捧如何, 故同山坐田一隅 粟種捌升付, 劃給右參疋價爲乎矣… 卞正事.

田主 自筆 高處堅(手決)

위 明文은 乾隆 43년, 즉 正祖 2년(1778) 12월에 田主 高處堅이 (同姓人)에게 작성해 준 文記로, 탈락이 심하여 상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여기서도 山債 3疋을 粟種 8되부치기로 劃給하고 있다. 그러나 본문기는 한 필지(片)의 畓이 함께 기재되어 있어 허여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㊵ 嘉慶貳拾參年戊寅三月二十三日吳氏處明文.

右明文事段, 吾矣母親大忌經營, 而(탈락) 値此荒牛變通無路, 故同宅正木拾疋(탈락). 貿穀次捧用後, 價本段里內員舊家基(탈락), 元處現處買得田皮牟伍斗付只…永永放賣是遣, 本文記段去年分失火 故不得許與是在果… 卞正事.

田主 李恒泰 (喪不着)

위 明文은 가경 23년, 즉 純祖 18년(1818) 3월 23일에 田主 李恒泰가 吳氏에게, "母親의 大忌를 치룰(비용을) 흉년을 당하여 변통할 길이 없으므로, 同宅(吳氏)에게 正木 10疋을 곡식을 사기 위해 받아 쓴 후, 그 값으로 里內員에 있는 옛 집터 (舊家基)와 元處現에게 買得한 皮牟 5斗부치기를 영원히 방매하고, 본문기는 지난 해의 失火로 인하여 넘겨 주지 (許與) 못한다"는 내용이다.

5. 租稅條의 備納

㊶ 康熙貳拾年辛酉正月貳拾伍日校生李燦前明文.

右明文事段, 子汝林亦, 烽軍以捧上兵物中, 火藥參斤乙矢失, 矣身本以貧寒莫甚之人, 所備無策乙仍于, 同人前正木參疋乙, 上項矢失藥參斤買得本鐵次以貸出後, 家産蕩盡之餘, 他無報償之路, 祖上傳來多年耕食爲在, 廣寺田員粟種參斗付乙, 同前永永許給爲去乎, 同田肆標段…告官卞正爲乎事.

財主 校生 文德男(手決)

위 明文은 康熙 20년, 즉 肅宗 7년(1681) 정월 25일에 財主 校生 文德男이 校生 李燦에게, "아들 汝林이 烽軍으로 받아들인 兵物 중 화약 3斤을 분실하였는데, 이몸(文德男)은 본래 貧寒이 막심한 사람으로 (분실한 화약을) 마련할 방책이 없기에 同人(李燦)으로부터 正木 3疋을 위의 분실한 화약 3斤을 사는 本錢으로 대출한 후, 家産을 탕진한 나머지 달리 빚을 갚을 방도가 없으므로 조상전래로 多年 갈아먹던 廣寺田員(너분절왓?) 粟種(조씨) 3 斗부치기를 영원히 許給한다"는 내용이다. 火藥 값을 辨濟하기 위한 것이다.

㊷ 乾隆陸年辛酉捌月拾捌日任致遠處明文.

右明文事段, 身爲牧子同色條, 同人處正木貳疋貸出後, 價本段妻邊衿得爲在, 舟貴員皮牟柒斗付只, …永永放賣爲乎矣, 本文記段他田并付乙仍于, 不得許給爲去乎, … 卞正事.

田主 李世仁(手決)

위 明文은 乾隆 6년, 즉 英朝 17년(1741) 8월 18일에 田主 李世仁이 任致遠에게 "牧子된 몸으로 同色馬를 마련키 위해 同人(高允重)에게 正木 2疋을 貸出한 후, 그 값으로 妻家에서 妻 몫으로 받은(衿得) 舟貴員 皮牟 7말부치기를 同人에게 영원히 放賣하되, 本文記는 他田이 함께 기재되어 있는 탓으로 許給하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同色馬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㊸ 乾隆二十四年己卯十二月十七日前別監姜世翼前明文.

右明文事段, 同前正木壹疋貸出, 以備貢條之後, 價本段黃吾里員皮牟貳斗付只…及獨子員粟壹刀付只…許門員粟壹刀付只…同前永永放賣爲去乎…卞正事.

田主 私婢 內丁壯(右手寸)

위 明文은 乾隆 24년, 즉 英祖 35년(1759) 12월 17일에 田主 私婢 內丁壯이 前別監 姜世翼에게, "正木 한 필을 대출하여 貢條를 마련한 후, 그 값으로 黃吾里員 皮牟 2말부치기와 獨子員 粟 1刀(升)부치기 및 許門員 粟 1刀부치기를 同人에게 영원히 방매한다"는 내용이다. 여기서의 貢條는 身貢인 듯 하다.

㊹ 乾隆貳拾玖年甲申(月 누락)初二貳日□□相處明文.

右明文事段, 要用所致, 矣身所食還上報給難堪是去以, 勢不得已, 同人正木壹疋半代粟拾壹斗代(貸의 誤)出後, 價本段加時磊員粟種伍升付只… 本文器(記의 誤)并以, 同人處永永放賣爲去乎…卞正事.

田主 安召史(右手村)

위 明文은 乾隆 29년, 즉 英祖 40년(1764) 〈月 누락〉 2일에 田主 安조이 (召史)가 □□相에게, "요용소치로 본인(矣身)이 빌려 먹은 還上穀을 報給하기 난감함으로, 同人에게 正木 1필 半 대신 粟 11말을 대출한 후 그 값으로 加時磊員 粟種 5되부치기를 本文記와 아울러 영원히 방매(賣渡)한다"는 내용이다. 즉 이 明文은 빌려 먹은 還上穀을 갚기 위해 粟 11말을 대출하고 그 값으로 粟種 5되부치기를 방매하고 있다.

㊺ 乾隆參拾貳年丁亥拾月貳拾貳日高處監處明文.

右明文事段 矣徒三男妹本以貧寒之人, 他此荒年, 許多所食還上備納無路, 故正木貳疋貸得, 各分反賣納還之後, 價本段祖上流來是在, 柰木里員粟種壹斗伍升付… 標內田庫永永報給爲乎矣, 本文記段, 年允腐破未能詳考乙仍于, 不得許與爲置… 卞正事.

田主 婢 良春(右手寸)

위 明文은 乾隆 32년, 즉 英祖 43년(1767) 10월 22일 田主 婢 良春이 高處監에게, "우리들 3남매는 본래 貧寒한 사람으로, 흉년을 당하여 허다히 빌려 먹은 還上穀을 備納할 길이 없으므로, 正木 2疋을 貸得하고 각각 나누어 되팔아서 환곡을 납부한 후, 값은 祖上流來의 柰木里員 粟種 1斗 5升 부치기 밭을 영원히 보급하되, 본문기는 해가 오래되어 마멸되어 詳考할 수 없으므로 許與하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이 明文도 빌려먹은 還上穀을 갚기 위한 것이다.

㊻ 乾隆參拾貳年丁亥貳月初伍日高萬富處明文.

右明文事段, 矣妻男牧子, 同色馬出處無路乙仍于, 同萬富處騎馬一匹及正木壹疋代用後, 價本段妻邊祖上流來田, 別老川岳北邊員皮牟壹石付只… 本文記并永永報給… 卞正事.

田主 康後祥(手決)

위 明文은 乾隆 32년, 즉 英祖 43년(1767) 2월 5일에 田主 康後祥이 高萬富에게, "妻男이 牧子인데 同色馬를 마련할 길이 없는 탓으로 高萬富에게 騎馬 1匹 및 正木 1疋을 貸用한 후, 그 값으로 妻家에서 妻 몫으로 받은 祖上流來의 別老川岳 北邊員 皮牟 1石부치기를 본문기와 아울러 영원히 報給한다"는 내용이다. 同色馬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㊼ 乾隆參拾肆年(干支 누락)肆月拾柒日高瑞鑑前明文.

右明文事段, 矣身子奴高石身役玖所牧子(탈락)是白如可, 本場屯馬中, 同色馬許多是乎等以, 勢不得已, 同宅貳禾雄馬壹匹代出後, 價本段正木壹疋半及加時磊員, 粟種五升付只田, 正木壹疋論價是遣…餘木價矣身女貳, 同宅拾胖告工使還爲旀, 本文記并以永永報納爲去乎… 卞正事.

田主 高萬(左手寸)

위 明文은 乾隆 34년, 즉 英祖 45년(1769) 4월 17일에 田主 高萬이 高瑞鑑에게, "아들 高石의 身役이 9所場 牧子로 있는데, 9소장 屯馬 중에 (충당해야) 할 同色馬가 많으므로 하는 수 없이 同宅(高瑞鑑)에게 두살배기 숫말 한 필을 貸出한 후, 그 값으로 正木 한 필 반 및 加時磊員의 粟種 5되부치기 밭을 正木 한 필로 값을 정하고, 남은 正木의 값은 이몸의 딸 둘을 同宅의 拾胖告(雇의 誤)工(?)으로 使喚할 것으로 하여, 本文記와 아울러 영원히 報納한다"는 내용이다. 이 明文도 同色馬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6. 其 他

㊽ 康熙伍拾壹年壬辰四月拾參日高允重處明文.

右明文事段, 同人依家基不足是如, 墻外皮牟壹斗參升付只…田庫, 退墻次, 正木伍拾尺捧上後, 同人處永永放賣爲去乎… 卞正事.

田主 文得敬(手決)

위 明文은 康熙 51년, 즉 肅宗 38년(1712) 4월 13일에 田主 文得敬이 高允重에게, "同人이 집터(家基)가 부족하다고 하므로, 담장 밖의 皮牟 1斗3 升부치기 田庫에 담장을 물릴 수 있도록 正木 50尺을 받은 후에 영원히 방매한다"는 내용이다.

Ⅳ. 相換文記와 分財記類

1. 상환문기

㊾ 康熙參拾肆年乙亥貳月初陸日長妻男柳益山處相換記.

右相換記事段, 同人亦其三寸前買得爲如乎, 家代田及家果, 矣妻父分給矣妻處爲在, 家代田牟種肆斗付只… 標分明田庫乙, 相面永永相換爲去乎… 卞正事.

田主 自筆執 書員 李永雲(手決)

위 相換記는 康熙 34년, 즉 肅宗 21년(1895) 2월 6일에 田主 書員 李永雲이 長妻男 柳益山에게, "同人(柳益山)이 三寸에게 買得한 家垈田 및 집과 본인(李永雲)의 妻父가 본인의 妻에게 分給한 家垈田 牟種 4말부치기를 相面하여 영원히 相換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이유는 불분명하다.

㊿ 乾隆二年丁巳十二月十四日高瑞鑑處相換明文.

右相換明文事段, 矣身田庫在於中文里西邊, 所謂池童山員粟種壹斗付(탈락), 右人家坐之致, 願爲相換爲乎矣, (탈락)種壹斗付代給爲有等以… 四標分明田庫, 本文記并以永永相換爲乎矣 年前矣身右人處借屯入踏之際 禾貳馬匹自斃是乎等以, 右頂相換爲在, 長生矣田庫貳禾起耕後, 推尋執耕亦爲白去乎… 卞正事.

田主 代子 自筆執 高鳳鉉(手決)

위 相換明文은 乾隆 2년, 즉 英祖 13년(1737) 12월 14일에 田主 代子 高鳳鉉이 高瑞鑑에게, "中文里西邊에 있는 이몸의 밭, 이른바 池童山員 粟種 1말 부

치기를 右人이 家坐가 (협소한) 소치로 相換을 원하여, □種 1말 부치기를 代給하였으므로 本文記와 아울러 영원히 상환하되, 年前에 이몸이 右人(高瑞鑑)에게 屯을 빌려 入踏할 때에 두살배기 말이 自斃하였으므로 위의 相換한 長生矣田庫을 두살배기로 起耕한 후, 推尋하여 執耕하라"고 한 내용이다.

㊿ 乾隆貳拾伍年庚辰貳月拾參日高處章前相換明文.

右相換事段, 矣婦造家爲有亦以, 中文里內員皮牟肆斗付只… 四標分明田庫果, 別老川員皮牟伍斗付只… 田貳庫乙代給是遣, 中文里池員家基皮牟拾壹斗付只… 四標分明田庫永永相換爲乎矣, 兩片本文記段, 他田并付故不得相換爲去乎… 卞正事.

田主 吳繼姬(手決)

위 相換明文은 乾隆 25년, 즉 英祖 36년(1760) 2월 13일에 田主 吳繼姬가 高處章에게, "본인(吳繼姬)의 며느리가 집을 지었으므로, 中文里內員 皮牟 4말 부치기와 別老川員 皮牟 5말 부치기 두 곳을 代給하여, 中文里 池員家基 皮牟 11말부치기와 영원히 상환하되, 양편의 본문기는 다른 밭이 함께 기재되어 있는 탓으로 상환하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㊿① 乾隆貳拾玖年甲申拾貳月貳拾日高瑞鑑前相換文.

右相換事段, 同前池員皮牟柒斗付田中, 矣身作家居生後, 代田段吳繼希處相換耕食是在, 內員皮牟肆斗付… 及別老岳員皮牟伍斗付… 右兩庫田準計, 家地代相換, 本文記并以永永相換爲去乎… 卞正事.

田主 高萬富(手決)

위 상환명문은 乾隆 29년, 즉 英祖 40년(1764) 12월 20일에 田主 高萬富가 高瑞監에게, "同前(高瑞鑑)의 池員 皮牟 7말부치기 밭 안에 이몸이 집을 지어 살면서, 代田은 吳繼希에게 상환하여 갈아 먹던 內員 皮牟 4말부치기 및 別老岳員 皮牟 5말부치기 두 곳을 家地 대신으로 계산하여 본문기와 아울러 영원히 상환한다"는 내용이다.

㊿② 乾隆伍拾壹年丙午正月九日高昶敬處相換明文.

右相換事段, 同人田在甘山南便長旨員, 皮牟貳拾貳斗付只是遣, 吾矣妻便

衿得田, 正子基員粟種壹斗貳升付, 彼此相當田相換爲矣, 本文記并以同人處, 永永相換爲去乎… 憑考事.

自筆執 金穎彬(手決)

위 상환명문은 乾隆 51년, 즉 正祖 10년(1786) 정월 9일에 金穎彬이 高昶敬에게, "甘山里 남쪽 長旨員에 있는 同人(高昶敬)의 밭 皮牟 22말부치기와 본인의 妻家에서 妻 몫으로 받은 밭 正子基員 粟種 1말2되 부치기는 彼此 相當한 밭으로 서로 교환하되, 본문기와 아울러 동인에게 영원히 상환한다"는 내용이다.

㊹ 同治肆年乙丑正月拾捌日李邦榮處相換文.

右相換文事段, 吾矣家舍占連于右人田, 中文池東員皮牟貳斗陸升付只, 而其代田段中文里內員, 外流來田皮牟貳斗伍升付… 分明而以此田庫, 永永相換放賣, 而本文記段他田并付不得并與… 憑考向事.

相換田主 高台祐(手決)

위 相換文은 同治 4년, 즉 高宗 2년(1865) 정월 18일에 田主 高台祐가 李邦榮에게, "본인의 家舍가 中文里 池東員에 있는 右人(李邦榮)의 밭 皮牟 2말 6되부치기에 占連되어 있으므로, 그 代田으로 中文里內員 外家流來田 皮牟 2말 5되부치기를 지급하여 영원히 상환 방매하고, 본문기는 다른 밭이 함께 기재되어 있어 并與하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㊺ (탈락)月貳拾捌日高允重明文.

右爲相換事段, 中文里里內員, 故鄭世英處明文買得田… 同里員, 文俊資處買得, 皮牟三斗付只果, 永永相換爲乎矣, 同田小不足添價, 正木壹疋價捧後, 本文記并以永永換定爲置… 卞正事.

田主 任七善(手決)

위 相換明文은 (연대미상) 田主 任七善이 高允重에게, "中文里 里內員 故 鄭世英에게 買得한 밭을 同里員 文俊資에게 買得한 皮牟 3말부치기 밭과 영원히 상환하되, 同田이 작고 添價가 부족하여 正木 1필 값을 받은 후 본문기와 아울러 영원히 換定한다"는 내용이다.

2. 分財記

(1) 衿記

衿記는 곧 衿付文記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兄弟姉妹의 分衿 내용을 同一文書에 표시하지 않고 子女 1인씩 衿(몫)을 別書해 주는 文書이다. 이에는 두 장이 있다.

㊻ 雍正十三年乙卯九月二十二日末女處衿記.

卞限川員畓租種一斗付, 下里員皮牟一石付, 古考川洞員皮牟二斗付, 俳叱園員皮牟八斗(付), 卞奐洞員皮牟十八斗付, 城洞員皮牟八斗付, 許門員二庫合粟四升付, 右田文記段 三子衿付, 獨子田同付.

財主 自筆父 幼學 學等(手決)

雍正 13년(英祖 11, 1735) 9월 22일에 財主 父 幼學 學等이 末女에게 卞限川員 볍씨 한 말부치기, 下里員 겉보리 한 섬부치기, 古考川洞員 겉보리 두 말부치기, 俳叱園員 겉보리 8말부치기, 卞奐洞員 겉보리 8말부치기, 城洞員 겉보리 8말부치기, 許門員 두 곳의 조씨 합계 4되 부치기를 衿付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상의 밭 文記들은 세 자식에게 나누어 준 몫 중 獨子의 밭에 함께 기재되어 있다고 하였다.

㊼ 乾隆參拾肆年己丑參月初玖日第陸女婿高昶敬處衿記.

右衿記, 長旨員任石貴處買得田, 皮牟貳拾斗付, 腮木田員奴老郎金處買得田, 粟種壹斗付, 依此施行.

財主 母 吳氏(右手掌)

乾隆 34년(英祖 45, 1769) 3월 9일에 財主 母 吳氏가 第6女 사위 高昶敬에게 任石貴에게서 산 長旨員 겉보리 20말부치기와 奴 老郎金에게서 산 腮木田員 조씨 한 말부치기를 衿付하는 문서이다. 이 文記에는 母 吳氏가 右手掌을 하고 있다.

(2) 葉作記

㊽ 道光貳拾肆年甲辰參月初捌日次妹處葉作記.

右葉作記事段, 長田員粟種捌升付, 及洞水員租種貳升付, 永永許耕食爲去乎, 日後更無雜談之弊者.

和主 衡中(手決)…

위 葉作記는 道光 24년, 즉 憲宗 10년(1844) 3월 8일에 和主 衡中이 次妹에게 長田員 粟種 8되부치기 및 洞水員 租種 2되부치기를 영원히 갈아 먹도록 허가하는 것이니, 일후에 잡담하는 폐단이 없도록 하라는 내용이다.

(3) 別給文記

別給文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재주가 재산을 別給하는 문서로서, 일반적인 재산 상속과는 구별되는 문서이다. 따라서 재주가 父·祖에 한하지 않고 別給 대상자의 범위도 넓은 것이 특징이다. 또한 이는 넓은 의미의 分財文書에 포함되지만 별급된 재산은 재산분재시 또는 和會時에 分報(分衿) 이외의 별도의 재산으로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인 특징이다.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3장이 있다.

㊾ 康熙參拾陸年丁丑四月拾捌日高允重處(別給)

右別給事段, 他無所與之物, 江汀好音所地員, 畓貳片合租種壹斗付只… 同里內員皮牟貳拾伍斗付只… 中文里者溫堂洞員粟種壹斗付只… 四標分明田畓及□馬壹匹牡雌牛壹首等乙, 永永別給爲去乎… 辨正事.

財主 妻父 李燦(手決)

위 別給文記는 康熙 36년, 즉 肅宗 23년(1697) 4월 18일에 財主 妻父 李燦이 高允重에게, 달리 줄 물건이 없으므로 江汀 好音所地員 畓 2필지(片) 합계 租種 1말부치기와 同 里內員 皮牟 25말부치기 등 田畓과 말 1필, 소 한 마리를 영원히 별급한다는 내용이다.

㊿ 康熙陸拾壹年壬寅正月二十二日仲子允重處別給.

右別給事段, 允重之孝□於他子, 几于奉養是最多誠, 故使喚婢宋化身乙, 後所生并以永永別, 給 鎭將使用事.

財主 父 高(手決)…

위 別給文記는 康熙 61년, 즉 景宗 2년(1722) 정월 21일에 財主 父 高氏가

仲子 允重에게, 효성이 다른 아들에 비해 뛰어나고 奉養에 정성을 다했으므로 使喚婢 宋化를 後所生과 아울러 영원히 별급하니 오래 사용하라는 내용이다.

⑹ 雍正玖年辛亥三月初十日長婦姜氏處別給.

右別給事段, 今當初謁之日, 略干婢子及田畓牛馬別給爲去乎, 使喚婢宋化壹所生婢介沙利及家坐田皮牟陸斗付, 李永雲許沙日兩人處買得田, 江汀里內員皮牟貳石付, 妻父前別得田, 洞受池員租種壹斗付亦爲, 別得畓中文里內員, 皮牟貳斗付, 文厚得處買得田, 同員皮牟貳庫, 合拾貳斗付, 衿得田正子基員, 粟種壹斗貳升付, 婢孝良處買得田, 同員粟種陸升付, 金承云處買得田, 吾造味洞東邊, 皮牟拾參斗付, 安先鐵處買得田, 全神堂員參庫, 合皮牟拾參斗付, 衿得田, 壯雌牛壹首壯雌馬壹首等物, 永永別給爲臥乎事.

財主 高(手決)…

위 別給文記는 雍正 9년, 즉 英祖 7년(1731) 3월 10일에 財主 高氏가 長婦 姜氏에게, 初謁日을 당하여 약간의 婢子와 田畓·牛馬를 別給하고 있는데, 그 내역을 보면, 婢子는 使喚婢 宋化의 壹所生 婢 介沙利이며, 田畓은 家坐田 皮牟 6말부치기, 李永雲·許沙日 양인에게 買得한 밭 江汀里內員 皮牟 2석부치기, 妻父에게서 別得한 논 洞受池員 租種 1말부치기, 別得田 中文里內員 皮牟 2말부치기, 文厚得에게 買得한 밭 同員 皮牟 두 곳 합계 12말부치기, 衿得田

地　　境	取 得 經 緯	作　物	面　積
家坐田		皮　牟	6斗付
江汀里內員	李永雲 許沙日 양인에게서 買得	〃	2石付
洞受池員	妻父에게서 別得	租　種	1斗付
中文里內員	〃	皮　牟	2斗付
同　員	文厚得에게서 買得(2庫)	〃	12斗付
正子基員	衿得田	粟　種	1斗2升
同　員	婢 孝良에게서 買得	〃	6升
吾造味洞東邊	金承云에게서 買得	皮　牟	13斗
全神堂員	安光鐵에게서 買得	〃	13斗

正子基員 粟種 1말 2되부치기, 婢 孝良에게 買得한 밭 同員 粟種 6되부치기, 金承云에게 買得한 밭 吾造味洞東邊 皮牟 13말부치기, 安光鐵에게 매득한 밭 全神堂員 3곳 합계 皮牟 14말부치기 및 衿得田이며, 牛馬는 건장한 소 한 마리와 건장한 말 한 필 등을 영원히 別給한다는 내용이다. 이 중 田畓의 내역을 다시 표로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4) 掃墳條

㊷ 乾隆二十一年丙子正月初九日父田主遺言據掃墳條.

一. 掃墳條 江汀旌義畓員四片 租種壹斗伍付只, (탈락) (탈락)付, 長元堂洞員粟種捌合付.

一. (탈락)掃墳條, 里內員麻子參斗付, 同田皮牟貳斗付.
亡弟掃墳條, 亇希川員畓陸片, 租種柒合付, 上代員皮牟參斗付事.

一. 男衿, 池東山員婢愛今處買得, 粟種伍升付, 里內員皮牟(탈락), 文得敬處買得, 同員皮牟參斗付, 文後得處買得, 上代員(탈락) (탈락) 章處買得, 粟種壹升付事.

一. 長妹衿, 池東山員婢安心處買得, 粟種陸合付, 舟歸員金南彩處買得, 皮牟柒斗付, 亇希川員奴甘男處買得, 西邊壹片畓租種參斗付, 同畓買得北邊壹片, 租種拾伍合付事.

一. 次妹衿 七日泉員夫時元處買得 皮牟柒斗付 吾路穴員李萬□處買得, 皮牟參斗付, 亇希川員奴百斤處買得畓貳片, 租種參升(탈락) 付事.

媚　　高瑞鑑(手決)
執筆長妹夫　　金德永(手決)
次妹夫　　金命獻(手決)

위 掃墳條는 乾隆 21년, 즉 英祖 32년(1756) 정월 9일에 妻男과 두 妹夫가 父母의 死後 그 遺言에 따라 부모·亡弟 등의 掃墳條를 만들어 둔 후, 그 나머지 밭곳(田庫)을 妻男과 두 姉妹가 分財하는 文書로, 文記의 작성에는 妻男과 두 妹夫가 立會하였으며, 특히 執筆은 長妹夫가 담당하였다. 내용을 표로 만들면 다음과 같다.

名　　目	地　　境	作　物	面　積
掃墳條	江汀旌義畓員四片	牟　種	1斗5合付只
	長元堂洞員	粟　種	8合付
□　□	里内員	麻　子	3斗付
掃墳條	同　田	皮　牟	2斗付
亡　弟	丁希川員畓陸片	租　種	7升付
掃墳條	上代員	皮　牟	3斗付
男　衿	池東山員婢愛今處買得	粟　種	5斗付
	里内員	皮　牟	?
	文得敬處買得同員	〃	3斗付
	文後得處買得上代員	?	?
	□□章處買得田	粟　種	1升付
長妹衿	池東山員婢安心處買得	〃	6合付
	舟歸員金南彬處買得	皮　牟	7斗付
	丁希川甘奴男處買得	租　種	3斗付
	西邊壹片畓		
	同畓買得北邊壹片	〃	15合付
次妹衿	七日泉員夫時元處買得	皮　牟	7斗付
	吾路穴員李萬□處買得	〃	3斗付
	丁希川員奴百斤處買得	租　種	3升付
	畓貳片		

(5) 都會明文

㉓ 嘉慶十六年辛未四月十七日都會明文.

右都會事段 流來自己田 余之夫妻掃條成置後 其餘田庫 各子女處平均分給爲去乎 以此施行永久遵行事.

一. 掃條 卞希川員衿得 一片畓租種壹斗付 無仇尾員流來田 牟種貳拾伍斗付.

長子元謙衿

子 女	地 境	取得經緯	作 物	面 積
掃 條	卜希川員	衿得一片畓	租 種	1斗付
	無仇尾員	流來田	牟 種	25斗付
長子	家坐北片員	流來田	牟 種	2斗付
元謙衿	背仇員	衿得田	〃	7斗付
	念木洞員	〃	粟 種	8合付
	所說員	李永太處 買得田	牟 種	10斗付
	七日泉員	衿得田	粟 種	1斗付
	前新堂員	玄萬寶處 買得田	牟 種	5斗付
	亭子基員	敦浦里金穎彬處 買得田	粟 種	1斗2合付
	無仇尾員	流來田	牟 種	10斗付
次子	里內員	高永秀處 買得田	牟 種	2斗付
亨謙衿	上基員	吳戒完處 相換田	粟 種	2升付
	長溫堂員	衿得田(二合)	〃	1斗5合付
	別老川員	〃	牟 種	7斗付
	同員	〃	〃	5斗付
	柰木里員	〃	〃	3斗付
長女衿	伍造尾洞員	金穎彬處 買得田	〃	1石3斗付
	上基員	衿得田	粟 種	2升付
次女衿	廣迫只員	高完福處 買得田	牟 種	1石付
	殯所旨員	朴世春處 買得田	粟 種	3升付
參子	里內員	元處恩處 買得田	〃	4升付
宅謙衿	廣分乭員	衿得田	〃	3升付
	金路員	〃	牟 種	3斗付
	堂田員	金召史 買得	〃	6斗付
長孫(達海)	里內員(別給)	吳戒完處 相換田	〃	4斗付

一. 家坐北片員流來田 牟種貳斗付 背仇員衿得田 牟種柒斗付 念水洞員衿得田 粟種捌合付 所說員李永太處買得田 牟種拾斗付 七日泉員衿得田 粟種壹斗付 前新堂員玄萬寶處買得田 牟種伍斗付 亭子基員敦浦里金穎彬處相換田 粟種壹斗貳升付 無仇尾員流來田 牟種拾斗付.

次子亨謙衿

一. 里內員高永秀處買得田 牟種貳斗付只, 上基員吳戒完處相換田 粟種貳升付, 長溫堂員衿得田二合粟種壹斗伍合付, 別老川員衿得田 牟種柒斗付, 同員衿得田 牟種伍斗付 奈木里員衿得田 牟種參斗付.

長女衿

一. 伍造尾洞員金穎彬處買得田 牟種壹石參斗付 上基員衿得田 粟種貳升付.

次女衿

一. 廣迫只員高完福處買得田 牟種壹石付 殯所旨員朴世春處買得田 粟種參升付.

參子宅謙衿

一. 里內員元處恩處買得田 粟種肆升付, 廣分乭員衿得田 粟種參升付 金路員衿得田 牟種參斗付, 堂田員金召史處買得田 牟種陸斗付.

一. 里內員吳戒完處相換田 牟種肆斗付 長孫達海處別給事.

財主 父(手決)

執筆 異姓五寸姪 金東球(手決)

위 都會明文은 嘉慶 16년, 즉 純祖 11년(1811) 4월 17일에 財主(父)가 祖上으로부터 傳來하는 자기 소유의 밭을 자신 夫婦의 掃條로 만들어 둔 후, 그 나머지 밭곳(田庫)을 각 子女, 즉 세 아들과 두 딸에게 평균하여 分給하는 分財文書이며, 末尾에는 長孫(達海)에게 別給한 내용도 있다. 내용을 표로 정리해 보면 前面의 표와 같다.

맺 는 말

이상에서 高在一氏 집안에 소장되어 있는 田畓文記를 분석 검토해 보았다. 아래에 이를 요약함으로써 결론에 대신하고자 한다.

① 전답문기는 대체로 《儒胥必知》의 양식을 따르고 있으나 記載順序는 筆執

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本文記에 매매전답 외에 다른 전답이 함께 기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引渡하지 못한다고 明記하고 있다. 즉 개중에는 '他田并付' 등으로 기재하여 구체적으로 本文記의 성격을 표현하지 않는 것도 있으나 流來田·葉作記·衿記·和會文記·都許文記라 하여 본문기의 성격을 밝힌 것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失火로 인하여, 혹은 해가 오래 되어 마멸되어 상고할 수 없기 때문에 引渡하지 못한다는 것도 있다.

② 토지 취득의 경위는 대체로 祖上傳來·衿得·買得·家垈·自起·墓坐·祭條·掃墳條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③ 토지매매의 원인으로는 負債를 辦濟하기 위해, 要用所致로, 凶年과 貧寒 때문에, 山債·喪債로 因하여, 租稅條의 備納을 목적으로, 집터를 확장하기 위해, 그리고 相換의 경우는 집을 짓기 위해, 소재지의 거리 관계 등으로 매매·상환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전답문기에 기록된 파종작물은 牟種(보리씨)·粟種(조씨)·皮牟(겉보리)·租種(벱씨)·麻種(삼씨) 등이었다.

⑤ 면적의 단위는 파종작물의 量으로 파악하여 落只(지기)·付只(부치기)로 표현되고, 논인 경우에 片(판이 : 필지)으로 기록하고 있다.

⑥ 매매가격의 표시물은 正木(혹은 木綿·白木)이 대부분이었으며, 이 외에 牛馬의 貸得(貸出·貸用)으로, 혹은 잡곡이나 겉보리·조 등을 빌어 먹고 그 값으로 주는 경우도 있다.